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채희석 변호사

정부는 금융투자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투자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 8월 12일 공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이번 일부개정령의 개정 이유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적정성의 원칙 적용대상에 파생상품 등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추가하도록 함.
- (2)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에 대한 부당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함.
- (3) 특정금전신탁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위탁자가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함.

2. 주요 내용**가. 적정성의 원칙 적용대상 확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이번 일부개정령은 그 적정성의 원칙 적용대상에 파생상품 등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의 부당권유 금지

기존 시행령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일부개정령은 그 예외를 폐지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 지정 구체화

일부개정령은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그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